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, 법조 기자, 국회 출입기자

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(담당 : 이지현 팀장, 박성은 간사 02-723-0666 jw@pspd.org)

제 목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할 검찰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

날짜 2015. 2. 27. (총 2 쪽)

보도자료

“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” 참여연대, 검찰청법 개정안 낸 임내현, 김동철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

일시 및 장소 : 2015년 2월 27일 (금) 오전 9시 40분, 국회 정론관

- 국회의원 김동철과 국회의원 임내현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(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은 오늘(27일)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,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는 청와대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,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최소 한 1~2년 이내에 검찰로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. 이 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- 지난 1997년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법으로 금지하자, 검사에게 사표를 내게 한 뒤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게 하고,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단 2년을 보더라도 총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,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6명 중 5명은 청와대 근무 후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. 형식적으로 법은 위반하지 않았을 지라도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편법적인 인사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.
-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내현 의원은 사표를 낸 후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검사의 경우 청와대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2년 7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김동철 의원의 경우는 검찰에 사표를 낸 검사는 사표낸

후 1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고,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3년 4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.

참여연대는 이들 의원들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, 이들 의원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. 끝.